



술 품질인증 표지 및 표시방법

[시행 2013. 5. 16.] [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-67호, 2013. 5. 16., 일부개정]

농림축산식품부(식품산업진흥과), 044-201-2137

1. 표지(標識) 도표



2. 도표제작 방법

가. 크기 : 표시하려는 제품 또는 포장 등의 크기, 형태,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가감하여 제작한다. 이 경우 가로 100 : 세로 147 비율을 유지하고 표지에 포함된 모든 요소를 동일 비율로 가감하여 제작하되 식별이 가능하도록 가로의 최소 규격은 12mm로 한다.

나. 문자 : 한글과 영문이 사각 프레임 도형 내에 수직으로 일치하도록 배열하며 크기와 비례를 준수하여야 한다. 한글 및 영문의 서체는 표지와 다른 임의의 서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.

다. 색깔

1) "가" 형의 바탕색은 녹색(C70+Y100)으로 한다.

2) "나" 형의 바탕색은 기본색상은 금색(C10+M25+Y100+K10)으로 하되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금별색 또는 금박(Pantone 873 C)을 사용 할 수 있다.

3) 국·영문 및 표기 요소 : 흰색으로 한다.

3. 표시방법

가. "가" 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.

나. "나" 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주원료와 국(麴)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% 국내산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.

다. 인증번호는 품질인증 표지의 바로 밑에 가로 폭을 벗어나지 않도록 표기하되, 표기형식은 품질인증서에 표기된 인증번호에 괄호가 포함된 "(국가지정 - 가 - xx 호)"와 같이 한다.

라. 품질인증 표지는 제품 상표, 포장, 송장 또는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함께 인쇄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동일 제품에 서로 다른 내용의 표지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.